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장규권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592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8. 22.

발 의 자 : 장규권 의원

찬 성 자 : 정재동 의원

1. 제안이유

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맨발걷기 산책로의 보행안전에 힘쓰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함(안 제3조제3항 신설).
- 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- 맨발걷기 산책로의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, 침수 방지 등 유지 보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5조제2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, 제6조의5, 제16조의3 등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
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- 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- 3)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8. 30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맨발”을 각각 “맨발걷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의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맨발 보행”을 “맨발걷기 산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맨발”을 “맨발걷기”로 한다.

- 2. 맨발걷기 산책로의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, 침수 방지 등 유지·보수

제6조제1항 중 “맨발”을 “맨발걷기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예산의 사용)”을 “(행정적·재정적 지원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.</u></p>
<p>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(생략) 2.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.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4.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.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맨발걷기</u> ----- ----- 3. <u>맨발걷기</u> ----- ----- -- 4. <u>맨발걷기</u>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의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5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 구</p>	<p>제5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 ---</p>

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맨발 보행로의 조성·확충 및 정비

<신 설>

2.·3. (생략)

4.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

5. (생략)

제6조(정보망 구축) ① 구청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조(예산의 사용) (생략)

-----.

1. 맨발걷기 산책-----

2. 맨발걷기 산책로의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, 침수 방지 등 유지·보수

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5. 맨발걷기 -----
--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제6조(정보망 구축) ① -----
맨발걷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(현행과 같음)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

[시행 2024. 1. 1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47호, 2024. 1. 11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걷기”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걷기 산책로”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써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.
 - 가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 - 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 - 다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 - 라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, 둘레길,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
3.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맨발 보행로의 조성·확충 및 정비
2.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·관리
3.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
4.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
5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정보망 구축) ① 구청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예산의 사용)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 (제1447호, 2024.1.11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58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제6조의5(건강도시의 조성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·개선하는 도시(이하 “건강도시”라 한다)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
2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[시행 2023. 9. 29.] [대통령령 제33755호, 2023. 9. 26., 일부개정]

제22조의2(신체활동장려사업)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
2.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
3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본조신설 2021. 11. 30.]

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7. 20., 2017. 7. 26., 2022. 1. 11.>

1. “보행자길”이란 보행자(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마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아. 그 밖에 통학로,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체험코스,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
2. “보행환경”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·생태적·역사적·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.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